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(백승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6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9.

발 의 자 : 백승아 · 김문수 · 문정복
박은정 · 강경숙 · 최민희
진성준 · 박지원 · 허영
진선미 · 김 윤 · 이재강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,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,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악의적으로 침해하여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.

이에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,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

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유치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).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3제3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”를 “다음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”를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2.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(연임 또는 중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